

# 중독과 자기조절 사업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3년 12월 1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BK21플러스 ‘중독과 자기조절’ 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팀의 목표)

1. 중독과 자기조절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
2. 중독과 자기조절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 수행
3. 중독 예방 및 자기조절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4. 지역대학원 육성 사업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 수립
5. 중독과 자기조절 관련 국제 협력 사업의 수행

## 제3조(사업팀의 구성)

1. 사업팀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BK21플러스 사업 참여교수,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계약교수, 박사후연수생 등으로 구성한다.
2. 사업팀에는 사업팀장, 사업팀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팀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사업팀장)

1. 사업팀장은 사업팀을 대표하고 임기는 7년이다.
2. 사업팀장은 사업팀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3. 사업팀장은 사업팀 교수회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사업팀장은 본인의 발의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교체될 수 있다(구체적인 절차는 제 6조 ‘참여교수의 교체’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위원회)

1. 사업팀은 사업기획, 심의, 집행, 평가 등 사업팀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사업팀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장은 사업팀장이 맡아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① 사업팀의 연간 사업계획 및 특별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 ② 사업팀의 연간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계약교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④ 박사후과정생 및 사업팀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⑤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관한 사항
  - ⑥ 해외 장기 및 단기 연수생 선발에 관한 사항
  - ⑦ 사업팀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사업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운영위원은 위임장 제출을 통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참여교수의 교체)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여교수는 교체할 수 있다.
  - ① 건강상의 이유나 퇴직 등 참여교수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② 참여교수의 연구가 사업팀 연구방향과 관련성이 없을 경우
2. 참여교수는 본인의 발의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교체될 수 있다.
3. 사업팀장이나 참여교수의 발의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로 신규 참여교수를 총원할 수 있다.
4. 신규 참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참여교수의 교체 및 추가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계약교수)

1. 사업팀에 참여하는 계약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갖춘 국내외 심리학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충남대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사업팀은 계약교수의 선발을 위해 일정기간의 채용공고를 한다.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3. 계약교수의 임용절차는 ‘충남대학교 계약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계약교수의 임용계약기간은 ‘BK21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교수의 임용계약기간의 변경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5. 계약교수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① 사업팀 내 공동연구 또는 단독 연구 수행
  - ② 대학원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수행
  - ③ 필요시 사업팀 소속 학과의 강의 및 특강
  - ④ 사업팀장을 보좌하여 기타 사업팀 관련 업무 수행

제8조(박사후과정생)

1. 사업팀에 참여하는 박사후과정생은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2. 사업팀은 박사후과정생의 선발을 위해 일정기간의 채용공고를 한다.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3. 박사후과정생 지원자는 소정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및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박사후과정생 지원신청서 1부

- ② 이력서 1부
  - ③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④ 연구계획서 1부
  - ⑤ 연구실적물 목록 1부
4. 박사후과정생은 사업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계약기간은 'BK21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5. 박사후과정생은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① 사업팀 참여교수와의 공동 연구 수행
    - ② 대학원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수행
    - ③ 사업팀장을 보좌하여 기타 사업팀 관련 업무 수행
  6. 박사후과정생은 사업팀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하여 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박사후과정생은 1년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수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술저서 1편 이상을 저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연구보고서 및 업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 박사후과정생의 임무 및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1. 사업팀 참여대학원생은 참여 당시 재학생 또는 연구생으로 등록된 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석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의 전일제 학생
  - ② 박사과정: 입학 후 4년 이내의 전일제 학생
  - ③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후 6년 이내의 전일제 학생으로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이어야 한다.
2. 사업팀에 참여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자격요건충족에 대한 확인을 위해,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 기준 4대 보험 가입내역서를 제출함을 의무로 한다.
3. 사업팀 지원대학원생의 선발은 참여대학원생 가운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선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른다.
  - ① 지도교수의 추천의견
  - ② 대학원생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 ③ 학업 및 연구계획
  - ④ 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사업팀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및 교체는 1개 학기(6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승인 또는 사업팀장의 승인으로 지원대학원생을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학원생의 의무와 제재)

1. 사업팀 지원대학원생은 전일제로 주 40시간 이상 자신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전념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및 다른 대학원생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2. 지원대학원생은 기타활동(시간강의, 타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업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원대학원생은 당해 연도에 학위논문 이외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학진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투고하고 게재해야 한다.
4. 지원대학원생은 당해 연도에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연구를 발표해야 한다.
5. 지원대학원생은 졸업 시까지 BK21플러스 관련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하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6. 지원대학원생은 졸업논문을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학진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투고하고 게재해야 한다.
7.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지원금을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 지도교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한다.

제11조(장단기 해외연수대학원생의 선발)

1. 참여 대학원생과 지원 대학원생 중에서 장단기 해외연수 및 학술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소정의 지원서와 증빙서류 및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팀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외연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① 지도교수의 추천의견
  - ② 해외연수의 교육적, 연구적 필요성
  - ③ 지원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
3. 선발된 해외연수 참가자는 계획서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 종료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기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자는 연수 종료후 1년 이내 1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석학 및 신진연구자의 초빙)

1. 해외석학 및 신진연구자를 초빙할 수 있는 사업팀의 국제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팀 주최 세미나 또는 강연
  - ② 사업팀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 자문
  - ③ 교환강의 프로그램
  - ④ 공동강의 프로그램
  - ⑤ 기타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업
2. 해외석학 및 신진연구자 초빙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3조(성과급 지급)

1. 사업팀의 교육, 연구, 운영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참여교수에게 연구, 교육, 봉사 활동에 따른 차등적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급 지급은 매 년차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다.

2. 성과급 배점은 연구 30%, 교육 30%, 봉사 40%로 한다.
3. 연구 성과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 ①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간 및 학술대회 발표
  - ② 학술저서 발간
  - ③ 연구과제 수행
3. 교육 성과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 ① BK21플러스 관련 교과목의 강의시수
  - ② 신규 교과목의 개발
  - ③ 영어 강좌 개설
  - ④ 참여대학원생 지도실적
4. 봉사 성과 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 ① 사업팀 주최 각종 행사 조직 및 운영
  - ② 사업팀 기여도
  - ③ 기타 사업팀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 제14조(규정의 개폐)

1. 사업팀 운영 규정의 개정 발의는 사업팀장 또는 참여교수 1/30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2. 사업팀 운영 규정의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참여교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교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15조(기타사업 및 예산운용 시행세칙)

1. 상기 운영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2. 상기 운영 규정에 상술되지 않은 사업팀 예산운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 2014년 2월 및 8월 졸업·수료 예정자는 제10조 3항,4항,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독과 자기조절 사업팀 예산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년 12월 1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BK21플러스 ‘중독과 자기조절’ 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함)의 예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1. 사업팀 석사과정 지원대학원생에게는 월 600,000원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2. 사업팀 박사과정 지원대학원생에게는 월 1,000,000원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3.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사업팀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차등적 지급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3조(신진연구인력 인건비)

1. 사업팀 신진연구인력의 급여는 월 2,500,000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의 급여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 제3조(국제화 경비)

1. 참여교수의 단기해외연수(국제학술대회 참가)는 연간 2,000,000원 한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2. 신진연구인력의 단기해외연수는 연간 2,000,000원 한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3.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를 위한 단기해외연수 지원은 논문 1편당 발표자 1인만을 지원하며, 1인당 1,500,000원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4.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의 장기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5. 해외석학 및 신진연구자 초빙에 필요한 항공료, 논문발표비, 토론비, 회의비, 체재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 제4조(성과급)

1.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교육, 연구, 봉사 활동영역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급하며, 사업팀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차등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급 평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다.

### 제5조(학술활동지원비)

1. 참여교수와 참여 및 지원 학생들이 국내학술대회에 논문발표를 위해 참가할 경우

교내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학회참가 지원비를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국내논문게재료, 국외논문교정비, 문헌구입비 등의 학술활동지원비를 지급해야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다.

#### 제6조(시행세칙의 개폐)

1. 사업팀 시행세칙의 개정 발의는 사업팀장 또는 참여교수 1/3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2. 사업팀 시행세칙의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결을 참여교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교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기타사업)

1. 상기 운영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2. 상기 운영 규정에 상술되지 않은 사업팀 예산운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참여교수 성과급에 대한 연구영역 평가기준표(제정 2013. 12. 16.)

평가항목		배점	인정환산율	산출방법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분야별 상위 10%)	10	-단독저자(1인)의 경우, 100%  -주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 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논 문에 명시된 경우, 70%  -공동연구의 경우, 1/공동연구자수	기준점수 × 인정환산율
	국제학술지 (SSCI급)	6		
	국내등재학술지	4		
	국내등재후보학술지	2		
학술 발표	국제학술대회발표	2		기준점수 × 인정환산율
	국내학술대회발표	1		
저서	국제전문학술서	20		기준점수 × 인정환산율
	국내전문학술서 (번역서는 해당 없음)	10		
연구	연구과제		-5,000천원당 1점	기준점수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최대 10점	-1건당 5점	기준점수



[별표 2] 참여교수 성과급에 대한 교육영역 평가기준표(제정 2013. 12. 16.)

평가항목		배점	최대 기준	비고	산출방법
강의	BK21플러스 관련 교과목 강의시수	3	9	강좌당	기준점수
	신규교과목 개발	1	3	강좌당	
	영어강좌 개설	2		강좌당	
	강의평가			강좌당 평균점수 ÷ 강좌수	
학생 지도	지도학생 배출실적		5	참여대학원생 1인당 -석사학위 1점 -박사학위 2점	
	지도학생 취업실적	1	5	참여대학원생 1인당	

[별표 3] 참여교수 성과급에 대한 봉사영역 평가기준표(제정 2013. 12. 16.)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산출방법
봉사 활동	사업팀 주최 행사, 워크샵, 콜로키움의 조직	5	1건당	기준점수
	운영위원	10		
	사업팀장	30		
	사업팀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판단한 사항		최대 10점	

[별표 4]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에 대한 평가기준표(제정 2013. 12. 16.)

평가항목 <sup>1)</sup>		배점	비고	산출 방법	
연구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분야별 상위 10%)	10	1건당	기준 점수
		국제학술지 (SSCI급)	6		
		국내등재학술지	4		
		국내등재후보학술지	2		
	학술 발표	국제학술대회발표	2		
		국내학술대회발표	1		
교육	BK21플러스 관련 교과목 이수	2	강좌당		
봉사	사업팀 주최 행사, 워크숍 등의 단순참석	1	1건당		
	사업팀 주최 행사, 워크숍 등의 조직 및 운영	5	1건당		
	기타 사업팀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판단한 사항		최대 10점		

1) 영역별 배점기준은 연구영역 30%, 교육영역 30%, 봉사영역 40%으로 한다.